

동국대사대부속금산중학교 운영위원회

수 신 학교운영위원

(경유)

제 목 2024년도 제13기 제68회 학교운영위원회(임시회) 소집

1. 관련: 금산중학교-10339(2024.12.31.)
2. 동국대사대부속금산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제68회 학교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제68회 동국대사대부속금산중학교운영위원회(임시회-긴급) 소집공고문 1부.
2. 제68회 동국대사대부속금산중학교운영위원회(임시회-긴급) 심의 자료 1부.

동국대사대부속금산중학교운영위원회



수신자

담당자 이세리 간사 이상량 운영위원장 좌승훈

협조자

시 행 운영위 -68 (2024. 12. 31.) 접수

우 576-962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로 47번지 /

전화 (063)543-0721 전송 (063)544-0721 / /공개

동국대사대부속금산중학교 공고 제2024-20호

제68회 학교운영위원회(임시회) 집회공고

동국대사대부속금산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58회 학교운영위원회(임시회) 집회를 공고합니다.

1. 일 시 : 2025. 1. 2.(화) 11:00

2. 장 소 : 본교 운영위원회 회의실

3. 안 건

가. 학교법인동국대학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(안)

4. 참고사항 : 학부모, 학생, 교직원, 지역인사 방청 가능

2024년 12월 31일

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중학교운영위원회



안건 번호	13기-24년-68회-165호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학교법인동국대학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

제안년월일 : 2024. 12. 31.
제안자 : 교 장 임완진
소 관 : 행정실장 이상량

1. 제안 이유

사립학교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, 학교법인동국대학교 정관 제24조, 제24조의2, 제24조의 3, 제111조에 의거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 2인을 선임 하고자 제안함.

2. 위원회의 구성

- 가.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회에 두며, 위원은 7인으로 구성
- 나. 구성단위별 정원
 - 초·중·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2인
 - 대학평의회 평의원 중 2인
 -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한자 3인

3. 위원회의 운영 및 임기

- 가.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회에 두며, 비상설 기구로 운영
- 나.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개방임원 선임대상자 추천을 마친 날까지로 한다.

4. 위원회의 기능

- 학교법인동국대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방이사와 추천감사(이하 개방임원 “이라 한다)개방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

- 붙임 1. 사립학교법 제14조(임원)
2.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 2(개방이사의 추천·임원)
3. 학교법인동국대학교 정관 제24조, 24조의 2, 제24조의 3, 제111조



사립학교법

[시행 2019. 3. 19] [법률 제15954호, 2018. 12. 18, 일부개정]

교육부(사립대학정책과) 법인 044-203-6931, 재산 6933, 기타 6932
교육부(학교혁신정책과) 044-203-6450
교육부(고등교육정책과) 044-203-6927
교육부(교원정책과) 044-203-6940

제3절 기관

- 제14조(임원)** ①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는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. 다만, 유치원만을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는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. <개정 1964. 11. 10., 1990. 4. 7., 1997. 1. 13., 1999. 8. 31.>
- ②이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.
- ③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(단,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)에 해당하는 이사(이하 "개방이사"라 한다)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7. 27.>
- ④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위원회(이하 "대학평의위원회"라 한다)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(이하 "학교운영위원회"라 한다)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,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·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. <개정 2007. 7. 27.>
- ⑤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,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. <개정 2007. 7. 27.>
-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,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. <개정 2007. 7. 27.>

부칙 <제16219호, 2019. 1. 15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에도 적용한다.



사립학교법 시행령

[시행 2019. 3. 19.] [대통령령 제29623호, 2019. 3. 19., 일부개정]

교육부 (교원정책과) 044-203-6940
교육부 (고등교육정책과) 044-203-6927
교육부 (학교혁신정책과) 044-203-6450
교육부 (사학혁신지원과) 044-203-6021
교육부 (사립대학정책과) 법인 044-203-6931, 재산 6933, 기타 6932
교육부 (교원정책과) 044-203-6940

- 제7조의2(개방이사의 추천·선임 등)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방이사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(제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) 안에 이사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 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.
④ 2 이상의 학교를 설치·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.
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
⑥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"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·경영 학교법인"이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, 신도의 교육, 선교 활동,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·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.
⑦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고시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⑧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방이사의 추천,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7. 11. 5.]

부칙 <제29623호, 2019. 3. 19.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징계의결의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등) ① 이 영 시행 전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의8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의8 본문에 따른다.

② 제2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

- 정관 -

제24조(임원의 선임방법)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
취임하는 임원의 성명, 나이, 임기, 현직 및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.<개정 '06.12.29>

② 이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재적승려 9인, 기여는 재가 불자로서 교육계 및 각계의 덕망 높은 인사로 한다.<개정 04.9.8, 15.08.18>

③ 조계종 재적승려 이사 및 감사는 조계종단의 2배수 이상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. 다만 법정 기일 내에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<개정 00.7.4, 15.08.18>

④ 조계종 재적승려 이외의 이사 및 감사는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.<신설 15.08.18>

⑤ 제22조 제2항에 의한 개방이사, 제25조 제5항에 의한 감사 1인에 대해서는 제3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신설 15.08.18>

⑥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 다만,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.<개정 06.4.24, 10.10.21, 15.08.18>

⑦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<개정 15.08.18>

⑧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<개정 15.08.18>

제24조의2(개방이사의 선임)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(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)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<신설 '06.12.29><개정 '07.8.22>

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,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.<신설 '06.12.29><개정 '07.8.22>

③ 초.중.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각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또는 대학평의원회규정으로 정한다.<신설 '06.12.29>

제24조의3(개방이사 추천위원회) ① 초·중·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위원회의 의사를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신설 '06.12.29><개정 '07.8.22, 10.10.21>

②추천위원은 7인으로 하고, 추천위원회는 동국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 두며,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신설 '06.12.29><개정 '07.8.22>

1. 대학평의위원회 위원 중 2인
2. 초·중·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2인
3. 법인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3인

③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11조(기능 등)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자문한다. <개정 10.10.21, '12.04.05>

1.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2.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3.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<신설 10.10.21>
4.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5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6.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7.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8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
9.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
10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
11.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
12.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